

성폭력

M. c. c. 15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

- “친고죄는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인가” -

일시 : 1993년 10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 : 여성백인회관

주 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거창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기독교평화여성회,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서울YMCA,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관리번호 :	분 야 :	분류기호 :
출판년도 :	언 어 : 32	Page :
출 처 :	[]	
출 판 사 :		
저 자 :		
원 저 자 :		
제 목 :		
주 제 어 :	성폭력 친고죄 성폭력특별법	
소 장 처 :	* 친고죄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각양의 입법안 비교	
비 고 :	친고죄에 대한 선문초고는 실고 있기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

- “친고죄는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인가” -

일시 : 1993년 10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 : 여성백인회관

주 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거창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기독교평화여성회,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서울YMCA,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청회 순서

사회 : 한명숙(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00 - 2:15 '친고죄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최영애(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특위 위원장)

2:15 - 2:30 친고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 입장발표

2:30 - 2:45 민자당 : 박헌기 의원(민자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45 - 3:00 민주당 : 강철선 의원(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장)

3:00 - 3:15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특위

: 최영애(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특위 위원장)

■ 지정토론

3:15 - 3:30 박원순 변호사

3:30 - 3:45 이연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3:45 - 4:00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질의응답 및 토론

4:00 - 5:00

■ 폐회

5:00 - 5:10

친고죄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취지 및 목적

이 조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성폭력의 근절방안으로 제기된 바 있고 현재 정기국회시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의 제정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조사된 것이다.

특히 친고죄 문제는 여성의 순결을 중요시하는 사회통념을 배경으로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과, 오히려 신고율을 낮춰 성폭력을 감추거나 더욱 조장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으로 대별되어,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이로인해 성폭력이 계속 조장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 폐지는 사실상 성폭력특별법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친고죄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1990년)와 한국여성개발원의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1992년)에서 전체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연구된 결과가 있다.

기존의 조사결과에서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친고죄는 오히려 피해사실을 한층 은폐시키고 가해자들의 가중된 폭력과 상습적인 폭력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고소시효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과,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상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성폭력을 개인의 순결상실로 보는 잘못된 사회통념을 바꾸어 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상담현장에 접수된 사례들 중에는 친고죄와 그에 따른 6개월이란 고소시한 때문에 자신의 피해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응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의붓아버지에게 12년동안 강간을 당해오다 그 악몽에서 벗어날 길이 없자 가해자를 살해한 김보은사건은 그 좋은 예이다.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하지만,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는 절차법상의 문제로 인해 어머니가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가족구조상, 그리고 가해자의 포악성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이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의 신고에 의한 것이었는데 친고죄로 되어 있는 한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결국 가해자를 살해하는 결과를 낳고야 말았다.

많은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협박에 의해 피해 당시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자신이 당한 일의 의미를 알게된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친고죄 고소기간이 지나버려 가해자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남는 것은 마음의 병, 정신질환, 극단적인 자살 내지 가해자 살인 등이다. 이 대표적인 예가 김부남 사건이다.

또한 고아나 장애인등 시설내에서 생활하는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는 친고죄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시설의 장이 수용아의 친권자로 되어있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그런데 이 시설의 장이나 직원에 의해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 자신이 가해자일 경우나 직원이 가해자일 경우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꺼린다는 것이다.

지난해 충주에서 있었던 'S' 장애인 시설내 성폭력사건이 그 단적인 예이다. 시설내 직원이 정신지체인인 수용아를 여러차례 추행한 사실을 보육사가 발견했으나, 당시 법정대리인인 시설의 장이 고소를 꺼리자 보육사들이 신고했다. 그러나 친고죄 규정에 의해 정식고소할 수 없었고, 그 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친권을 주장하며 고소를 했으나 곧 취하해 버리는 바람에 가해자가 직위해제되는 선에서 수사가 일단락되고 사실이 무마되고 말았다.

친고죄에 의한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가해자가 한동네에서 여러명의 아이들을 성폭행한 경우, 이 사실이 동네사람들에게 알려져도 친부모가 나서서 고소하지 않는한 수사나 어떠한 법적 제재도 불가능하여 가해자는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뿐만아니라 학교선생님이 제자의 피해사실을 발견하고도 부모가 이를 고소하지 않는한 그대로 덮어둘 수밖에 없거나 경찰이 성폭력 피해 여성을 인지하고도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없는 한 눈앞에 가해자를 놓고도 처벌은커녕 수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는 그동안 친고죄 문제에 대해 조사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람들이 친고죄의 존치를 실제로 원하는지, 아니면 친고죄 폐지를 원하는지, 존치를 원한다면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폐지를 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친고죄를 폐지함으로써 과연 피해자의 명예가 보호되는 것인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등, 친고죄 폐지가 성폭력 범죄 발생 억제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성폭력특별법의 올바른 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여기에서 '친고죄'라 함은 피해 당사자의 신고없이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 성폭력관련법은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및 강도강간 등은 비친고죄로 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흉기휴대의 경우나 2인 이상 합동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로 되어있다.

3. 조사 방법

조사대상자 선정은 성인남녀를 기준으로 하였고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전주, 광주 5대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과 절차는 먼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실무자 3인에 의해 남녀사무직, 대학생, 주부 50명에 대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토대로 수정 보완된 것을 본조사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1993년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배포 방법은 서울 종합대학 남녀학생, 유치원 자모, 반사회, 사무금융, 전문직 노조 조합원, 일반 기업체 남녀 사무직원등 일반인을 조사대상으로 2000부를 배포하기로 하고, 여연 성폭력특별법제정특위 12개 단체 회원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조사자가 임의선정하도록 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2000부중에 회수된 조사수는 모두 1187부(서울소재단체 1417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지방소재단체 400부)로서, 이중 실제 분석에 사용된 것은 500부이다. 최종분석수에 사용된 것은 500부로, 본조사 통계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90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추출되었다. 통계처리는 통계패키지 SPSS/PC*를 사용하였다.

3. 응답자의 특성

조사결과에 사용된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통계청 인구비례에 따라 성별로는 남자가 50.4%, 여자가 49.6%로 남자가 더 많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5.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30.4%, 40대 18.6%, 50대 15.2% 순이다.

<표1-1> 성별 응답자 분포 단위 : 명(%)

여	남
248(49.6)	252(50.4)

<표1-2> 연령별 응답자 분포 단위 : 명(%)

20세-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이상
179(35.8)	152(30.4)	93(18.6)	76(15.2)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 63.3%이고 미혼이 36.7%로 기혼여성이 훨씬 많았다. 응답자의 교육정도를 보면 대졸이 39.5%, 대재 33.5%, 고졸 21.8%, 중졸과 기타가 2.6%로 나타났다.

<표1-3> 결혼여부별 응답자 분포 단위 : 명(%)

기 혼	미 혼
316(63.3)	184(36.7)

<표1-4> 학력별 응답자 분포 단위 : 명(%)

중졸	고졸	대재	대졸	기타
13(2.6)	108(21.8)	166(33.5)	196(39.5)	17(2.6)

직업별로는 학생 33.2%, 전업주부 24.1%, 사무직 17.6%, 전문직 13.4%, 자영업 4.9%, 생산직 0.6%, 기타 3.6%로 나타났다.

<표1-5> 직업별 응답자 분포 단위 : 명(%)

전업주부	학생	전문직	사무직	생산·서비스직
119(24.1)	164(33.2)	66(13.4)	87(17.6)	16(3.2)
자영업	기타			
24(4.9)	18(3.6)			

4. 문항별 조사결과

- 1) 귀하나 아는 사람이 성폭력을 당했다면 제일 먼저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 2) 왜 위 기관을 선택하셨습니다?

여성단체가 65.4%로 가장 많으며, 경찰서가 30.6%, 여자형사기동대가 3.6%, 관공서 민원실이 0.4%순으로 나타났다.

<표2-1>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기관

여성단체(상담기관)	65.4%
경찰서	30.6%
여자형사기동대	3.6%
관공서 민원실	0.4%

각 기관별로 그 기관을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경찰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신고하기 쉬우므로”가 52.3%로 가장 많으며, “빨리 사건을 해결할 것이므로”가 31.5%로 나타났다. 여성단체(상담기관)나 여형사기동대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이며 여러가지 절차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가 각각 79.9%, 61.1%로 다른 기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이유 때문에 선호한 기관은 다른 기관에 비해 여성단체가 17.3% 가장 높고, 경찰서의 경우 3.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각 기관별 선택 이유

	경찰서	여성단체 (상담기관)	여형사기동대	관공서민원실
이 기관에 신고(이용)하기 쉬우므로	52.3%	2.2%	--	--
이 기관에 신고해도 비밀이 보장되므로	3.4%	17.3%	11.1%	--
이 기관이 빨리 사건을 해결할 것이므로	31.5%	1.5%	27.8%	--
믿을 수 있는 기관이며, 여러가지 절차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8%	79.9%	61.1%	--

* 위의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기관에 비해 여성단체를 가장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심리적 안정과 의료, 법적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서가 신고하기도 쉽고, 빨리 사건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과는 달리 정작 실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0.6%로서 여성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65.4%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이외에도 본 설문조사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기존의 연구를 통해 이미 지적된 바 있는 사법처리 관계자들의 피해자의 심문에 초점을 둔 수사와 재판과정으로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 절망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또한 신고하더라도 합의 및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귀하가 만약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면 다음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밀이 보장되고 귀찮게 불려다니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가 43.7%, “고소하겠다”가 38.5%, “가해자 측의 협박이나 괴롭힘을 막아준다면 고소하겠다”가 13.9%로 전체 응답자의 96.1%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고소하겠다고 답하였다. 반면 “절대로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3.9%로 나타났다.

<표2-4> 성폭력피해를 입었을시 고소여부

비밀이 보장되고 귀찮게 불려다니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	43.7%
고소하겠다.	38.5%
가해자 측의 협박이나 괴롭힘을 막아준다면 고소하겠다	13.9%
절대로 고소하지 않겠다.	3.9%

절대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고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순결을 상실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가 45.8%로서 가장 많으며, “경찰, 검찰에 귀찮게 불려다니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을 몇번씩 진술해야 하고 가해자와 직접대면도 해야 하기 때문”이 21.4%, “가해자로부터의 후환이 두려워서”가 16.7% “성폭력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 14.3%로 나타났다.

<표2-5> 절대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이유

다른 사람들에게 순결을 상실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45.8%
경찰, 검찰에 귀찮게 불려다니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을 몇번씩 진술해야 하고 가해자와 직접대면도 해야 하기 때문	21.4%
가해자로부터의 후환이 두려워서	16.7%
성폭력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14.3%
고소해 보았자 달라질 것이 없고 그동안 많은 성폭력 사건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가해자가 풀려나오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

* 위의 조사결과에서 본 설문조사 목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고소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38.5%를 차지한다는 것과, 57.6%가 조건부 고소를 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 97.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형사절차상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절대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3.9%의 응답자중 그 이유로서 다른 사람에게 순결을 상실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피해보호절차상의 이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을 개인의 순결상실로 보는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친고죄 존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지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명예보호제도 자체가 병행되어야 한다”가 55.8%로 가장 많았으며,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가 31.3%로 전체 87.1%가 친고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그대로 두고 친고죄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가 11.1%, “그대로 두어야 한다”가 2.0%로 친고죄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1> 친고죄 폐지에 대한 의견

폐지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명예보호제도 자체가 병행되어야 한다.	55.8%
폐지되어야 한다.	31.1%
그대로 두고 친고죄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11.1%
그대로 두어야 한다.	2.0%

연령별로 살펴보면, “폐지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명예보호제도 자체가 병행되어야 한다”와 “폐지되어야 한다”를 합한 전체 비율이 20대 92%, 30대 87%, 40대 76%, 50대 88%로 연령에 상관없이 친고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중 피해자보호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의 경우 65.7%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3-2> 연령별 친고죄 폐지에 대한 의견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폐지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명예보호제도 자체가 병행되어야 한다.	65.7%	53.0%	39.6%	57.3%
폐지되어야 한다.	25.8%	34.4%	36.3%	30.7%
그대로 두고 친고죄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8.4%	9.3%	20.9%	9.3%
그대로 두어야 한다.	--	3.3%	3.3%	2.7%

성별의 경우에도, “폐지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명예보호제도 자체가 병행되어야 한다”와 “폐지되어야 한다”를 합한 전체 비율이 여자의 경우 91%, 남자의 경우 83%로 성별에 상관없이 친고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중 피해자보호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의 경우 57.1%, 남자의 경우 54.4%로 나타났다.

<표3-3> 성별 친고죄 폐지에 대한 의견

	여	남
폐지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명예보호제도 자체가 병행되어야 한다.	57.1%	54.4%
폐지되어야 한다.	33.9%	28.4%
그대로 두고 친고죄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7.8%	14.4%
그대로 두어야 한다.	1.2%	2.8%

결혼여부의 경우에도 “폐지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명예보호제도 자체가 병행되어야 한다”와 “폐지되어야 한다”를 합한 전체 비율이 기혼의 경우 84%, 미혼의 경우 91%로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친고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중 피해자보호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혼의 경우 51.0%, 미혼의 경우 63.9%로 미혼이 기혼보다 피해자보호절차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4> 결혼여부별 친고죄 폐지에 대한 의견

	기혼	미혼
폐지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명예보호제도 자체가 병행되어야 한다.	51.0%	63.9%
폐지되어야 한다.	33.4%	27.2%
그대로 두고 친고죄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12.4%	8.9%
그대로 두어야 한다.	3.2%	--

직업별의 경우에도 “폐지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명예보호제도 자체가 병행되어야 한다”와 “폐지되어야 한다”를 합한 전체 비율이 전업주부의 경우 84%, 학생의 경우 91%, 전문직의 경우 85%, 사무직의 경우 85%, 생산서비스직의 경우 91%, 자영업의 경우 79%로 직업에 상관없이 친고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중 피해자보호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의 경우 63.2%, 사무직의 경우 58.3%, 전문직의 경우 52.3%, 자영업의 경우 50.0%, 전업주부의 경우 48.3%, 생산서비스직의 경우 45.5%로서 학생이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피해자보호절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5> 직업별 친고죄 폐지에 대한 의견

	전업주부	학 생	전문직	사무직	생산·서비스직	자영업	기타
폐지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명예보호제도 자체가 병행되어야 한다.	48.3%	63.2%	52.3%	58.6%	45.5%	50.0%	44.4%
폐지되어야 한다.	35.6%	28.2%	32.3%	26.4%	45.5%	29.2%	44.4%
그대로 두고 친고죄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11.9%	8.6%	13.8%	12.6%	9.1%	16.7%	11.1%
그대로 두어야 한다.	4.2%	--	1.5%	2.3%	--	4.2%	

학력별의 경우에도 “폐지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명예보호제도 자체가 병행되어야 한다”와 “폐지되어야 한다”를 합한 전체 비율이 중졸의 경우 69%, 고졸의 경우 78.3%, 대재의 경우 90.9%, 대졸의 경우 88.2%로 학력에 상관없이 친고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중 피해자보호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졸의 경우 38.5%, 고졸의 경우 44.3%, 대재의 경우 63.6%, 대졸의 경우 55.7%로 대재의 경우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피해자보호절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6> 학력별 친고죄 폐지에 대한 의견

	중 졸	고 졸	대 재	대 졸	기 타
폐지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명예보호제도 자체가 병행되어야 한다.	38.5%	44.3%	63.6%	55.7%	69.2%
폐지되어야 한다.	30.8%	34.0%	27.3%	32.5%	30.8%
그대로 두고 친고죄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15.4%	18.9%	9.1%	9.3%	--
그대로 두어야 한다.	15.4%	2.8%		2.6%	--

5) 친고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하신 경우만 답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고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성폭력범죄를 강도나 폭력등의 일반 범죄와 같이 개인적 순결상실이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가 4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하여 사건 즉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가해자 체포, 구속이 쉽기 때문에”가 27.1%, “그동안 고소가 어려웠던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가 14.4%, “신고율이 높아지면 국가나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가 13.6%로 나타났다.

<표3-7> 친고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성폭력범죄를 강도나 폭력등의 일반 범죄와 같이 개인적 순결상실이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	44.9%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하여 사건 즉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가해자 체포, 구속이 쉽기 때문에	27.1%
그동안 고소가 어려웠던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14.4%
신고율이 높아지면 국가나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13.6%

* 위의 조사결과에서 친고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서, “성폭력범죄를 강도나 폭력등의 일반 범죄와 같이 개인적 순결상실이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가 4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는 것은, 성폭력문제를 개인의 순결상실이 아닌 사회적 범죄행위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사건 즉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가해자 체포, 구속이 쉽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7.1%에 달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가해자가 풀려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았던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6) 문항 5에서 2)번 “그대로 두어야 한다”로 답하신 경우만 답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3-1>에서 “그대로 두되 친고죄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와 “그대로 두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65명중 그 이유로서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7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허위 신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명, “피해당사자가 알아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제3자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명, “가해자로부터 후환을 막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가 1명으로 나타났다.

<표3-8> 친고죄가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46명
허위신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11명
피해당사자가 알아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제3자가 나설 일이 아니기 때문에	5명
가해자로부터의 후환을 막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3명

7) 만약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법적인 절차가 마련될 경우에도 친고죄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65명중,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법적인 절차가 마련된다면 폐지되어도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69명 중 47명(68.3%),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2명(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9>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법적인 절차가 마련될 경우의 친고죄 존치여부

단위 : 명(%)

아니오	47(68.3%)
예	22(31.7%)

* 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명예를 보호할 법적인 절차가 마련될 경우에는 친고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8) 친고죄를 폐지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피해자 보호절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보호절차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 것은, “피해자의 비공개 수사, 비공개 재판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와 동행하여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는 대리인 제도” 16.4%,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에 성폭력에 대한 증거확보, 진단서 발급, 피해자 진료.치료의 의무화” 13.2%, “성폭력사건 전담 부서 설치 및 여형사배치” 8.5%, “가해자와의 격리제도” 6.3%, “민간운영의 성폭력 위기센터 설치 확대” 5.7%, “16세 미만의 피해아동의 진술증거능력채택제도” 4.3%로 나타났다.

<표4> 친고죄를 폐지할 경우 마련되어야 할 피해자보호절차

피해자의 비공개 수사, 비공개 재판	45.8%
피해자와 동행하여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는 대리인 제도	16.4%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에 성폭력에 대한 증거확보, 진단서발급, 피해자 진료.치료의 의무화	13.2%
성폭력사건 전담 부서설치 및 여형사배치	8.5%
가해자와의 격리제도	6.3%
민간운영의 성폭력상담소와 위기센터 설치확대	5.7%
16세 미만의 피해아동의 진술증거능력 채택제도	4.3%

9) 친고죄 폐지와 함께 피해자 보호제도가 마련된다면, 아는 사람이 성폭력피해를 당한 것을 알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자보호제도가 마련된 이후 아는 사람이 성폭력피해를 당한 것을 알았을 경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물어보았다.

조사결과는 “신고하도록 본인을 설득하겠다” 39.9%,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신고하겠다” 12.3%, “피해자의 비밀이 보장될 경우 신고하겠다” 36.4%, 로, 모두 88.3%의 응답자가 적극적인 신고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 피해자보호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고소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1.3%로서 “당사자에게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

<표5-1> 피해자보호절차 마련 이후 신고 여부

신고하도록 피해자 본인을 설득하겠다.	39.9%
피해자의 비밀이 보장될 경우 신고하겠다.	36.4%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겠다.	12.3%
당사자에게 맡기겠다.	11.3%

* 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친고죄가 폐지될 경우 신고율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비밀보장등 보호절차의 마련은 신고율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10) 친고죄가 폐지되지 않은채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친고죄 폐지가 관철되지 않은 채 법이 제정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신고율은 계속 낮을 것이므로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별 효용이 없을 것이다”가 5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22.1%,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19.6%, “큰 문제 없을 것이다” 3.8%로 나타나, 실제로 친고죄가 폐지되지 않은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입장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6> 친고죄 존치와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효과

신고율은 계속 낮을 것이므로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별 효용이 없을 것이다.	54.5%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22.1%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19.6%
큰 문제 없을 것이다.	3.8%

5. 요약 및 결론

본 조사는 현재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친고죄’ 존폐 여부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조사하여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친고죄 존폐여부에 대한 입장은 ‘무조건 폐지’가 31.3%, “폐지되어야 하나 피해자 명예보호제도 자체가 병행되어야 한다”가 55.8%로 나타나 폐지입장이 전체 89.1%로 압도적이다.

또한 폐지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성폭력범죄를 순결상실이 아닌 강도나 폭력 등의 일반범죄와 같은 사회적범죄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임을 들고 있다.

피해자보호절차가 마련되고 친고죄가 폐지되면 타인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사람이 48.7%, 본인에게 신고하도록 설득하겠다가 39.9%로 나타나고 있어, 친고죄 폐지는 신고율을 높이는 데 절대적 기여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친고죄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전체의 12.9%)의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 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들중 68.3%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의 신분을 보호할 법적인 장치가 마련될 경우에는 친고죄가 폐지되어도 좋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곧, 피해자 신분을 쉽게 노출시키는 현행 수사관행이나 재판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성폭력피해에 대한 고소는 곧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이라고 보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개인의 명예보호와 성폭력범죄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피해자보호제도와 친고죄 폐지가 동시에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보다 여성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5.4%로 압도적이며, 그 주된 이유로서 “믿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가지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를 들고 있어, 그동안 피해여성을 상담하고 법적, 제도적 절차에 대한 지원을 담당해 온 민간여성단체의 활성화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성폭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변화이다.

친고죄가 폐지되지 않은 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을 경우 성폭력범죄 억제효과에 대한 질문에서 신고율의 저조, 성폭력범죄의 은폐, 성폭력범죄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항목에 96.2%가 응답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사회적 범죄 및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친고죄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추이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조사결과들에서 볼 때,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친고죄가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폐시켜 상습범을 양산시키며, 결과적으로 성폭력증가의 주된 요인이 된다고 봄으로써, 친고죄 폐지론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친고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신분노출의 문제와 명예보호는 친고죄 존치로서가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상의 문제해결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우리나라 4대 강력범죄(강간, 강도, 살인, 방화)중 오로지 강간만을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친고죄로 규정하여 두는 것은 모든 여성을 잠정적인 성폭력피해 대상이 되게 할 뿐이다.

따라서 친고죄 폐지는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시키고 신고율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며,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여연 성폭력특별법제정특위, 민자당, 민주당 법안 비교표

친고죄

<여연>

- * 친고죄 전면 폐지 따라서 고소시한 없음.

<민자당>

- * 친고죄적용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직장관계에 의한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등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성기노출행위
- * 고소기간의 연장 : 현행법상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을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연장
- * 반의사불벌죄 : 중강제추행
- * 비친고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성폭력행위

<민주당>

- * 원칙적으로 비친고죄 따라서 고소시한 없음.
- * 반의사불벌죄 : 중강제추행, 직장에서의 직위등을 이용한 간음, 추행, 성적해악의 고지, 성적모욕,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중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간음,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친고죄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위	민자당	민주당
<p>제2장 처벌의 특례 제20조 (친고죄 규정의 배제) 제2조 2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96조 제306조의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장 형사사법의 특례 제26조 (고소) ①제22조 내지 제2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제29조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30조 (고소기간) ①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2장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과 사후관리 제13조 (친고죄 규정의 배제등) ①이 법 제2조 2항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96조, 제306조의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성폭력범죄중 이 법 제6조(중강제추행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직장에서의 지위등을 이용한 간음, 추행), 제8조(성적해악의 고지), 제9조(성적모욕), 제10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와 형법 제291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제294조(제291조의 미수범)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제297조 내지 제299조의 미수범),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③제2항에 규정된 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일치된 의사로 불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소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④이 법 제3조 내지 제12조의 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본다.</p>

피해자보호절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위	민자당	민주당
<p>제1장 총칙 제6조 (피해자의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가 성폭력구조단체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거나 수사기관등에 신고 또는 고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 또는 해고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p> <p>제7조 (수사등 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인권보장)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수사관 또는 조사관은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언론기관등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p> <p>제3장 절차의 특례 제23조 (경찰청등의 업무) 경찰청, 지방경찰청은 이 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조사를 위하여 경찰서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 2. 전담부서에는 과반수 이상의 여성경찰로 이루어진 조사관을 근무하게 하는 것 3. 피해자조사는 비밀이 보장된 안정된 장소에서 행하는 것</p>	<p>없음</p> <p>제3장 형사사법의 특례 제32조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없음</p>	<p>제5장 보칙 제34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기업 기타 단체는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p> <p>제23조 (수사공무원에 의한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의 누설금지) ①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무원은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 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p> <p>없음</p> <p>제17조 (피해자의 비공개조사청구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타인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사하여야 한다.</p>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위	민자당	민주당
<p>제24조 (피해자조사절차) ①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인 기타 피해자대리인은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은 때에는 조사요청을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은 위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피해사실 또는 피해에 상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해자대리인 또는 피해자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는 것 2. 신속하게 검증 감정진단서 발부 요청, 기타 관계인을 환문하거나 필요한 문서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3. 성폭력범죄 행위가 일어난 곳을 수색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4. 기타 피해사실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활동을 하는 것 ②제3항 제2호의 경우 관계인은 조사관에게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3항의 경우 조사관은 그 신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제25조 (의견서 제출) ①조사관은 조사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조사관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피해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제25조 제26조에 의해 작성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특히 신용할 만한 상황에 의하여 작성 또는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제313조 제1항</p>	없음	<p>없음</p> <p>제21조 (피해자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한 특례) 법원은 성폭력범죄사건의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해자와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있는 것은 그 서류가</p>
<p>제34조 (증거능력에 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 또는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p>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위	민자당	민주당
<p>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p> <p>제26조 (서류의 열람등) 피해자 또는 피해자대리인은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다만 수사중인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27조 (피해자대리인) ①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해자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대리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또는 변호사,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피해자대리인은 조사, 수사,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에 갈음하여 진술하거나 피해자를 동행하여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다. ④피해자가 무의탁 기타 사유로 피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p>	<p>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p> <p>없음</p> <p>없음</p>	<p>신빙할 만한 상태에서 작성 또는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p> <p>없음</p> <p>제3장 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장과 배상절차등에 관한 소송특례 제16조 (피해자대리인제도) ①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호주는 성폭력범죄의 수사과정이나 공판절차에서 피해자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대리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하거나 피해자가 참여하는 수사 또는 공판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보조하고 대질신문에서 피해자의 책문권 행사를 대리하는 등 피해자의 소송행위를 대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피해자대리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또는 변호사나 성폭력예방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선임하며, 그 인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검사 또는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농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피해자대리인의 선임신청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피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4항의 경우 피해자가 빈곤 기타 사유로 피해자대리인의 활동에</p>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위	민자당	민주당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⑥피해자대리인을 선임한 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제28조 (피해자대리인의 필요적 참여) 수사기관은 피해자대리인의 참여없이 피해자를 수사할 수 없다.	없음	없음
제29조 (피해자의 참여권) ①피해자 및 피해자대리인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 및 피해자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제30조 (비공개재판) ①피해자 또는 피해자대리인은 성폭력범죄의 심리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의 결정을 하되 증인신문 방식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제33조 (심리의 비공개)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피해자의 비공개재판청구권) 법원은 성폭력범죄사건의 공판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의 가족을 제외한 일반인의 방청을 금지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제18조 (증거보전의 청구권)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대리인이 피해자 결혼 기타 사유로 공판개시 후에 증인하기 곤란한 사유를 명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위	민자당	민주당
		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음	없음	제20조 (피해자의 증인에 대한신변안전조치청구권) ①검사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나 주요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피해자 또는 증인의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변안전조치의 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를 준용한다.
없음	없음	제24조 (언론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 언론기관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영상 등을 보도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대리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보도할 수 있다.
제31조 (재정신청) ①성폭력범죄를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2항과 제261조	없음	제3장 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장과 배상절차 등에 관한 소송특례 제22조 (피해자등의 재정신청) ①이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고소한 피해자나 피해자대리인 또는 성폭력범죄를 고발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위	민자당	민주당
<p>내지 제265조가 적용된다.</p> <p>제32조 (배상명령의 특례) ①피해자와 피해자대리인은 성폭력 범죄에 관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로 발생한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 이외에 위자료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소송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기타 배상명령의 절차, 효력에 관하여는 소송법 제25조 내지 제36조가 적용된다.</p>	없음	<p>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무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과 제261조 내지 제265조가 적용된다.</p> <p>제25조(배상명령의 신청과 특례) ①피해자와 피해자대리인은 성폭력 범죄에 관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와 피해자대리인은 제1항의 배상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 이외에 위자료 등 해당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의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의 배상명령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의 선고를 한 때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배상명령신청에 의한 심리절차와 배상명령의 효력등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p> <p>제28조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치료) ①국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피해자를 치료하기 어려운 때에는 피해배상이 확정되기 전에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치료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피해자 보호시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위	민자당	민주당
<p>제4장 피해자보호시설등 제33조 (성폭력상담소등의 설치) ①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성폭력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단체도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보호시설중 피해자들을 상당기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기준 기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p> <p>제35조 (성폭력상담소의 업무) 성폭력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행하는 것 2. 피해자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일시 보호하고 성폭력 및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3. 제2호의 경우 진단, 치료 및 요양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긴급히 임상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 4.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고 손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대하여 조력하는 것 5. 필요한 경우 피해자보호시설에 보호를 위탁하는 것 6. 성폭력의 예방,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등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 7. 기타 피해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 8. 위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p>		<p>제4장 성폭력예방활동과 피해자보호시설등 제29조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 제4호에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성폭력상담소와 동조 제6호에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나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성폭력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p>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위	민자당	민주당
<p>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p> <p>제36조 (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 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를 직접 진단, 치료 및 요양등을 하거나 이를 조력하는 것 2. 피해자를 상당기간 보호하면서 개별집단치료를 통하여 사회복지를 조력하는 것 3. 기타 제35조의 업무를 행하는 것 <p>제38조 (보건소등) ①보건소, 국공립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진단, 치료를 위한 24시간 응급반을 설치운영하는 것 2.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의 신청을 받아 피해자를 상담하고 진단 및 응급치료를 하는 것 3.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조사관에 대하여 제2호의 처리 결과를 자문하고 제증명을 발급하는 것 4.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행하는 것 5. 기타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연구조사를 행하는 것 <p>②국공립병원이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 이를 무상한다.</p> <p>③국공립병원은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 의료보험 급여에 의한다.</p>	<p>제5조 (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피해자의 신고를 받거나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거나, 병원 기타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3. 성폭력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 조력하는 일 4. 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p>없음</p>	<p>없음</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위	민자당	민주당
<p>제1장 총칙</p> <p>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법령의 제정 2.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3.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및홍보 4.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환경의 제거 5.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의료의 제공 6.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시설의 설치 7.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필요한 협조 8.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9. 제2호 내지 4호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시행 <p>제4조 (성폭력특별위원회) ①위 제3조 각호에 관한 사항 및 성폭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성폭력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특별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장 총칙</p> <p>제3조 (국가 등의 여성보호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진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등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없음</p>	<p>제4장 성폭력예방활동과 피해자보호시설 등</p> <p>제2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의 예방,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및 사후관리,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사연구 2.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홍보 3. 성폭력을 유발 또는 조장하는 유해환경의 정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제도개선 4. 성폭력피해자의 범죄신고와 사법처리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는 상담소의 설치, 운영 5.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사법절차 비용등의 보조와 국공립의료기관에서의 치료 6. 성폭력피해자를 일정기간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p>제27조 (성폭력대책위원회) ①정부는 제26조에 규정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성폭력대책위원회는 제26조 제7호에 규정하는 민간단체의 대표와 학부모 대표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성폭력범죄 유형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위	민자당	민주당
<p>제2장 처벌의특례</p> <p>제8조 (비동의간음죄)</p> <p>①여성의 동의없이 간음한 자...</p> <p>②사람의 동의없이 중추행한 자...</p> <p>③사람의 동의없이 추행한 자...</p> <p>제9조 (중강제추행)</p> <p>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중추행한 자...</p> <p>②13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하여 중추행한 자...</p> <p>제10조 (준중추행)</p> <p>사람의 심신상실, 정신장애 신체장애 기타의 사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중추행한 자...</p> <p>제11조 (특수 중강제추행)</p> <p>홍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9조의 죄를 범한 자...</p> <p>제15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비동의간음등죄)</p> <p>미성년자, 신체장애자,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제8조의 행위를 한 자...</p> <p>제16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등에 대한 간음등 죄)</p> <p>①존속 또는 연장의 친족관계에 있</p>	<p>없음</p> <p>제3장 형사사법의 특례</p> <p>제17조 (중강제추행)</p> <p>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상적인 성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다른 사람의 성기 이외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여자의 성기에 남자의 성기이외의 물질을 투입하는 추행을 한 자...</p> <p>②정신장애 기타의 사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제1항의 추행을 한 자...</p> <p>제18조 (특수중강제추행)</p> <p>홍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 17조의 죄를 범한 자...</p> <p>없음</p> <p>없음</p>	<p>없음</p> <p>제2장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과 사후관리</p> <p>제6조 (중강제추행등)</p> <p>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또는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여자의 성기에 성기이외의 물질을 투입하여 추행한 자...</p> <p>②심신장애나 신체장애 기타의 사유로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추행을 한 자...</p> <p>제3조 (특수강간, 특수중강제추행)</p> <p>①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약물을 사용하여 범행한 때 2.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때 3. 야간에 타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식으로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범행한 때 4. 가족 또는 다수인의 면전에서 범행한 때 5. 택시, 버스 기타 대중교통수단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승객에 대하여 승차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한 때 <p>없음</p> <p>없음</p>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위	민자당	민주당
<p>는 자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여성을 또는 법률에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가 그 구금된 여성을 간음한 자...</p> <p>제17조 (직장내의 성폭력)</p> <p>①교육, 훈련, 업무, 고용 기타 고용에 준하는 계속적 계약관계 기타 지휘관계를 이용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여성을 여성의 동의없이 간음한 자...</p> <p>④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할 목적으로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행한 자...</p> <p>제18조 (성협오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장소에 성폭력행위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도화 기타 유해환경을 제공하거나 그 이용에 편익을 주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음란한 언어, 음향, 문서, 도화, 영상,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그 동의없이 자기의 치부를 노출하는 등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음란한 언어, 음향, 문서, 도화, 영상, 물건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성적모욕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 	<p>제22조 (직장관계에 의한 추행)</p> <p>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직장에서의 업무상 감독 또는 보호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추행한 자...</p> <p>제24조 (통신매체이용음란)</p> <p>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또는 우편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서,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p> <p>제25조 (성기노출행위)</p> <p>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자...</p>	<p>제7조 (직장에서의 지위등을 이용한 간음, 추행)</p> <p>①직장 또는 계약관계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를 간음한 자...</p> <p>②직장 또는 계약관계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추행한 자...</p> <p>③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구금된 여자를 간음한 때...</p> <p>④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구금된 여자를 추행한 때...</p> <p>제11조 (통신매체이용음란)</p> <p>①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언어, 음향, 문서, 도화, 영상, 물건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달한 자...</p> <p>제9조 (성적모욕)</p> <p>①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에 대하여 그 동의없이 자기의 치부를 노출하는등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음란한 언어, 음향, 문서, 도화, 영상, 물건등을 사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성적모욕감을 일으키게 한 자...</p> <p>②전화, 우편 기타 통신매체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자...</p>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위	민자당	민주당
<p>4.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할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거나 하려는 등의 행위로 불쾌, 공포감을 주는 행위</p> <p>5. 기타 사람에게 성에 관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p>	<p>제23조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장소등에서의 추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중교통수단·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나 은밀한 장소에서 다른사람이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여자를 추행한 자...</p>	<p>제10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①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할 목적으로 버스, 지하철, 극장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여자를 추행한 자...</p>
<p>형법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등의 배포등), 제243조(음화등의 제조등), 245조(공연음란)의 죄</p>	<p>없음</p>	<p>동일함</p>
<p>형법 제31장 약취유인의 죄중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91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제293조(상습범), 제294조(미수범)</p>	<p>동일함</p>	<p>동일함</p>
<p>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에 의한 치사상), 제302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p>	<p>동일함</p>	<p>동일함</p>
<p>형법 제339조(강도강간)</p>	<p>동일함</p>	<p>동일함</p>
<p>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6항(특수강도강간등) 및 제5조의 7항(특수강간등)</p>	<p>동일함</p>	<p>제5조 (성폭력단체등의 조직등)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 제8조 (성적해약의 고지) ①타인에 대하여 간음, 추행 기타 성적 해약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한 자...</p>